

대통령령 제 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대부중개를 목적으로 게시판(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 또는 둘 이상의 대부업자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의미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여 거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2조의6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조의10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보안원 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에 한한다)

제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를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3천만원

2. 제1호 외의 자: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3억원

나.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1억원

제2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를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6호의 방식으로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1억원

2. 제1호 이외의 방식으로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 3천만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 :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등록신청인이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5억원

나. 그 밖의 경우: 3억원

제2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10(고정사업장 등)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법 제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적용한다.

1. 고정사업장: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2. 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전산 설비의 운용·유지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1명이상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3. 전산설비 등: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

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

나. 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다.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라.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

마.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바. 개인정보 및 전산자료의 안전한 처리 및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2항제2호”를 “법 제4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반사회적 고금리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 제한) ①법 제8조의2제

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이란 연 100분의 100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100을 단리로 환산한다.

제6조의4의 제목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로 한다.

제6조의5의 제목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을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의6제1항”을 “법 제9조의6제1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9조의6제4항에 따라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⑦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발견 또는 확인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6항에 따라 전화번호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2.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자료로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임이

소명되는 경우

제6조의8의 제목 “(중개수수료의 제한)”을 “(중개수수료의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부중개업자는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대부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대부업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1. 해당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의 목록 및 연락처
2. 등록 대부업자 여부 확인 방법
3. 법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8조의2의 주요 내용 등 대부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4. 제9조의6, 제9조의9, 제11조의 주요 내용 등 불법사금융업자 관련 유의사항
5. 제11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제7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다시 갖춘 경우

2. 임원의 퇴임 또는 직원의 퇴직으로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인력 요건을 다시 갖춘 경우
3. 대부업자등의 고의·중과실 없이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인력 요건은 제외한다)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다시 갖춘 경우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접수된 신고를 조사·분석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의3제2항제3호 중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4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업무 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3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 등록기관이 변경되는 대부업자등에 관한 모든 서류 및 그 밖에 자료 등을 금융위원회(제11조의3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을 포함한다)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한 자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갱신절차가 진행 중인자 중 법 제3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 등록기관이 변경되는 자의 해당 등록갱신 신청은 금융위원회에 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4(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 법 제3조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대부중개를 목적으로 게시판(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 또는 둘 이상의 대부업자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의미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여 거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u>
제2조의6(등록 등의 절차) ① ~ ③ (생략) ④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2. (생략) <u><신 설></u>	제2조의6(등록 등의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2조의10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자금융업감독

3. (생략)

⑤ ~ ⑨ (생략)

제2조의9(자기자본) ①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5천만원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②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규정」 제3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보안원 또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정보보호전문서비스 기업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에 한한다)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2조의9(자기자본) ①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각 목-----

--.

1.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3천만원

2. 제1호 외의 자: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3억원

나.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1억원

②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 각 목-----

-----.

1. 등록신청인이 법 제3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5억원

2. 그 밖의 경우: 3억원

<신 설>

③ (생 략)

제2조의10(고정사업장)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6호의 방식으로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1억원

2. 제1호 이외의 방식으로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 3천만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 :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등록신청인이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5억원

나. 그 밖의 경우: 3억원

③ (현행과 같음)

제2조의10(고정사업장 등)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법 제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적용한다.

1. 고정사업장: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2. 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전산 설비의 운용·유지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1명 이상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3. 전산설비 등: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

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

나. 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다.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라.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

마.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바. 개인정보 및 전산자료의 안전한 처리 및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및 관리 방

제2조의12(금융관련법령)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삭 제

2. ~ 48. (생략)

<신 설>

제6조의4(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
한 채권양도 금지) (생략)

제6조의5(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에서 “시·도지
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5. (생략)

한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사항

제2조의12(금융관련법령) 법 제4
조제1항제8호-----

-----.

2. ~ 48.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반사회적 고금리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 제한) ①법 제
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
분의 100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
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
00분의 100을 단리로 환산한다.

제6조의4(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현행과 같음)

제6조의5(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
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 및 제4항-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제6조의8(중개수수료의 제한) ①

• ② (생 략)

<신 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9조의6제4항에 따라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⑦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전화번호를 발견 또는 확인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6항에 따라 전화번호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2.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자료로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임이 소명되는 경우

제6조의8(중개수수료의 제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대부중개업자는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대부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대부업 이용자에게

제7조의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① (생략)
<신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1. 해당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의 목록 및 연락처
2. 등록 대부업자 여부 확인 방법
3. 법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8조의2의 주요 내용 등 대부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4. 제9조의6, 제9조의9, 제11조의 주요 내용 등 불법사금융업자 관련 유의사항
5. 제11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제7조의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요건을

② (생략)

<신설>

갖추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다시 갖춘 경우

2. 임원의 퇴임 또는 직원의 퇴직으로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인력 요건을 다시 갖춘 경우

3. 대부업자등의 고의·중과실 없이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인력 요건은 제외한다)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다시 갖춘 경우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7조의5(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정부법」 제2조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7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2. (생략) 3. <u>법 제4조제2항에 따른</u> 대부업자등의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 14. (생략)	<u>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u> <u>② 금융감독원장은 접수된 신고를 조사·분석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4조제1항·제2항</u>----- ----- ----- -- 4. ~ 14. (현행과 같음)
--	--

불법대부행위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등 신고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인 성명	신고인 전화번호
불법대부행위등의 유형 ☐ 불법대부광고 ☐ 대부업법 위반(최고금리 초과 등) ☐ 채권추심법 위반(폭행·협박 등)에 따른 처벌대상 행위	대부업법 또는 채권추심법 위반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파일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대부행위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불법대부행위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발견한 시각 또는 문자 수신 시각	해당 전화번호의 수신 유형
	년 월 일	전화[]/ 문자[]/ 우편[]/ 인터넷 []/ 팩스[]/ 전단지[]/기타[]
	년 월 일	전화[]/ 문자[]/ 우편[]/ 인터넷 []/ 팩스[]/ 전단지[]/기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5에 따라 ○○○○○장의 불법대부행위등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에 따라 불법 대부 행위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아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의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신고인의 성명, 전화번호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의뢰를 위한 제보자의 신원확인	수집·동의일로부터 3년

귀하는 위에 기술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처리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하실 경우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가 제한됩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 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되는 경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 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인의 성명, 전화번호, 첨부파일	제공후 3년

귀하는 위에 기술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하실 경우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가 제한됩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사금융중개업자 등 신고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	------

[기본사항]

구분 []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 신고/제보 []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제보 [] 기타 사금융피해상담

신고인 성명

신고인 전화번호

신고인 주소

[신고사항]

혐의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혐의업체 전화번호

혐의업체 주소

피해 내용

채권자 등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의뢰 의향 유무

[] 예 [] 아니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5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이 법의 위반 사실에 대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이 법의 위반 사실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기간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대외기관 수사·조치의뢰를 위한 신고자의 신원 확인	<u>수집·동의일로부터 3년</u>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 기간
<u>신고내용이 금융회사에 대한 민원에 해당하여 민원으로 분류·이첩되는 경우 민원의 대상이 되는 해당 금융회사</u>	<u>사실관계 확인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등</u>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u>제공 후 3년</u>
<u>신고내용이 대부(중개)업체와 관련 민원 또는 제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u>	<u>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소관 업무 처리 등</u>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u>제공 후 3년</u>
<u>신고내용에 위법혐의사항이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경찰서(청) 등 수사기관</u>	<u>신고내용 중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 등 소관 업무 처리 등</u>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u>제공 후 3년</u>
<u>금융지원 및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u>	<u>신고인에게 필요한 금융지원 및 법률지원 등 소관업무 처리 등</u>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u>제공 후 3년</u>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